

기획관리실소관
1996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1)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	기 정 예 산 액	구 성 비 (%)	증 감	%
합 계	62,025	100.0	57,429	100.0	4,596	8.0
인 건 비	17,570	28.3	17,570	30.6	-	
물 건 비	9,788	15.8	9,016	15.7	772	8.6
이 전 경 비	5,717	9.2	5,381	9.4	336	6.2
자 본 지 출	14,261	23.0	14,554	25.3	△ 293	△ 2.0
용 자 및 출 자	-	-	-	-	-	-
보 전 재 원	2,238	3.6	2,238	3.9	-	
내 부 거 래	3,432	5.5	0	0	3,432	
에비비 및 기타	9,019	14.5	8,671	15.1	348	4.0

○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액 574억 2천9백만원의 8.0%에 해당하는 45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620억2천5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2) 검토내역 및 의견

1996년도 제1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4억2천9백만원의 8.0%에 해당하는 45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620억2천5백만원의 규모로서 신규사업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물건비	7억7천2백만원(8.6% 증)
· 이전경비	3억3천6백만원(6.2% 증)
· 자본지출	△2억9천3백만원(2.0 감)
· 내부거래	34억3천2백만원(증)
· 예비비 및 기타	3억4천8백만원(4.0 증)으로

예산 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물건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0억1천6백만원의 8.6%에 해당하는 7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97억8천8백만원 규모로

○ 기획관리에 있어

· 도정업무총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p 47)	6백만원
· 도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p 47)	2백만원
·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공기업담당관실) (p 47)	1백만원
· 주요 현안사업 추진 (p 47)	7백만원
· 도정역점시책 추진 (p 47)	3백만원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건설 추진 (p 48)	5천만원
· 청주공항등 국책사업 추진 (p 48)	3천만원
· 기관단위 관서운영비 (p 48)	1천9백만원

· 관보대 및 법령집 (p 48)	1천만원
· 21세기위원회 운영 자료유인 및 물품구입비외 (p 49)	2천8백만원
· 21세기위원회 참석자 수당 (p 49)	△6백만원
· 21세기위원회 자문자료 수집 (p 49)	6백만원
○ 투자관리에 있어	
· 명예연구소 홍보용 VTR 제작 (p 51)	7백만원
○ 국제교류에 있어	
·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추진 (p 51)	2백만원
· 국제교류 업무추진 (p 51)	5백만원
· 관서운영비 (p 51)	3백만원
· 명예대사 도정홍보책자 구입외 (p 52)	1천만원
· 의전차량 임차료 (p 52)	5백만원
· 국제교류 업무추진 (p 53)	1백만원
· 외빈초청 여비 (p 53)	6천만원
○ 예산운영에 있어	
· 옥천도립전문대학설립 추진 (p 55)	5백만원
· 지역현안사업추진 업무추진비 (p 55)	3백만원
· 지역현안사업추진 특수활동비 (p 55)	5백만원
· 도정업무추진 pool 관서당경비 (p 55)	8천만원
· 도정업무추진 pool 수용비 (p 55)	2천만원
· 도정업무추진 pool 국내여비 (p 56)	1억원
· 지방공기업예산담당공무원 정액활동비 (p 62)	7백만원
·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외 수용비 (p 62)	5백만원
· 의료원 결산 및 정상화 업무추진 급량비 (p 62)	4백만원
· 상하수 요금 운영지도외 국내여비 (p 63)	4백만원

○ 법무관리에 있어

- 행정심판 업무추진 급식비 (p 64) 3백만원

○ 통계전산운영에 있어

-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유치추진 업무추진비 (p 65) 3백만원
-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유치설명회용 물품대외 일반수용비 (p 65) 1천7백만원
-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유치설명회장 임차료 (p 66) 1백만원
-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여비 (p 66) 5백만원으로

도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책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편성기준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pool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전망등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이경비에 있어 당초예산액 53억8천1백만원의 6.2%에 해당하는 3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57억1천7백만원 규모로

○ 기획관리에 있어

- 충북 21세기비전 대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p 49) △3백만원
- 충북 21세기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 (p 50) 6백만원
- 도정사료 제출자 보상 (p 50) 5백만원
-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개발 연계방안 연구 (p 50) 2천5백만원
-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p 50) 1억1천4백만원

○ 국제교류에 있어

- 중국 흑룡강성 방문 자매결연 체결 (p 54) 1천2백만원
- 충북100년 기념행사 자치단체 초청인사 보상 (p 54) 2백만원
- 충북100년기념 명예대사 초청 보상 (p 54) 2백만원

○ 예산운영에 있어

- 도정업무추진 pool 민간경상보조 (p 56) 2억원

○ 통계전산운영에 있어

- 충북 100주년기념사업(CD타이틀제작용역비) (p 66) △ 1천1백만원
- 광역정보시스템 구축 (p 66) 2억4천8백만원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개발연계방안 연구 용역비, 광역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하여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민간단체 pool 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 점을 감안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한 실적 및 주민에 대한 공헌도를 참작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셋째, 자본지출에 있어 당초예산액 145억5천4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9천3백만원이 감액된 142억6천1백만원 규모로

○ 기획관리에 있어

-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취득 (p 50) 2백만원

○ 국제교류에 있어

-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p 54) 4백만원
-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p 54) 2백만원

○ 예산운영에 있어

- 프린터 복사기 사무기기 구입 (p 54) 7백만원
- 옥천 공업전문대학 시설비(과목경정) (p 56) △ 29억8천9백만원
- 옥천 공업전문대학 시설부대비(과목경정) (p56) △ 1천1백만원
- 예산전산 프로그램 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p 57) 3백만원
- 예산통계작성용 노트북 컴퓨터 (p 57) 4백만원

○ 시·도립대학에 있어

- 대학본부신축및실습실, 강당보수실시설계비 (p 58) 5천6백만원(국)
- 옥천 공업전문대학 시설비 (p 58) 25억3천만원(국)
- 옥천 공업전문대학 시설 부대비 (p 58) 1천8백만원(국)
- 옥천 공업전문대학 시설 감리비 (p 58) 3억9천7백만원(국)

○ 의료원 운영에 있어

-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p 64) △6억원
- 청주의료원 영안실 연결통로 및 절개보수 (p 64) 1억원
- 충주의료원 자동생화학 분석기 구입 (p 64) 1억원

○ 법무관리에 있어

-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 (p 65) 4백만원

○ 통계전산운영에 있어

- 인터넷 충북 홈 페이지 구축용 컴퓨터 구입 (p 66) 3천만원
- 업무보고 전산화용 장비 구입 (p 67) 2천4백만원
- 인터넷 충북 홈 페이지 구축용 통신장비 (p 67) 2천2백만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기기의 대체 구입비, 옥천 공업전문대학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의 과목경정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원 운영에 있어 청주, 충주의료원 신규사업과 통계전산운영에 있어 인터넷 충북 홈 페이지 구축용 컴퓨터, 통신장비와 업무보고 전산화용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는 미계상 되었으나

○ 예산운영에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p 57) 34억3천2백만원이

계상된 데서 기인되며, 본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예산임.

다섯째,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6억7천1백만원의 4.0%에 해당하는 3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90억1천9백만원의 규모로 구조대 긴급구조차외 49건 3억4천8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데서 기인됨. (p 59 ~ p 6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의 권례, 답습적 편성 및 집행형태를 없애고 도정의 기본계획 운영의 필수사업비만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